

문서번호	재무과-12937
결재일자	2015.7.20.
공개여부	부분공개(6)

주무관	공공자산관리담당	재무과장	기획경제국장		
김대규	임현주	최상균	07/20 이용식		
협 조					

**변상금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
판결에 따른 향후 조치 계획**

2015. 7.

**기획경제국
재무과**

변상금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결에 따른 향후 조치 계획

변상금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결과 원고가 일부 승소함에 따라 기존 부과한 변상금 및 사용료중 착오 부과분에 대하여 전액 감액하고 재부과하여 신뢰 세정을 확립하고자 함

I 개요

- 사건명 : 2013누 32948 변상금등부과처분취소
- 원 고 : 신충환
- 피 고 : 성북구청
- 판 결 : 원고 일부 승(2015.6.17.)

○ 주요내용

- 공유수면 법리 적용 관련 사항 [피고 승]
- 변상금 사전 예고 관련 사항 [피고 승]
- 공시지가 적용 관련 사항 [원고 일부 승]

II 추진경과

- 2015.6.24. 서울고등검찰청 상고포기 지휘 요청 (재무과-11353)
 - 변상금, 사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인접지 공시지가 적용 법리 착오 적용에 따른 상고 포기
- 2015.7.1. 서울고등검찰청 상고 포기 결정 (소송사무제2과-5156)
 - 상고를 제기하여도 승소가능성이 희박하여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상금을 재산정하여 처분하는 것이 타당

III

향후계획

- 변상금 부과에 따른 사전예고 통지
- 공시지가 착오분에 대한 착오 부과분 전액 감액 및 재부과
 -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 소급 적용
 - 법원 판결 취지에 부합되는 공시지가 적용 (인근지번 공시지가 산술평균)

◎ 착오분 변상금 감액 및 재부과 내역

점유지	면적	용도	요율	변상금 내역				비 고
				착오 부과 변상금		재 부과 변상금		
하월곡동 152	62㎡	주거	0.005	과세 년월	변상금 (감액)	과세 년월	변상금 (재부과)	인근지번 공시지가 산술평균 적 용
				2012.8	5,377,570원	2015.8	3,869,650원	

◎ 착오분 점용료 감액 및 재부과 내역

점유지	면적	용도	요율	점용료 내역				비 고
				착오 부과 점용료		재 부과 점용료		
하월곡동 152	163 ㎡	영업	0.03	과세 년월	점용료 (감액)	과세 년월	점용료 (재부과)	인근지번 공시지가 산술평균 적 용
				2012.8 ~2014.8	88,504,120원	2015.8	53,331,850원	

붙임 : 공공용지 점용료 산출 내역서 1부. 끝.